

##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

###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

-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,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짐.

공제항목	종전	'23년
① 대중교통비	40%	80%(1.1.~)
② 전통시장	40%	50%(4.1.~)
③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*	30%	40%(4.1.~)

\*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, 영화관람료는 7.1.이후 지출분부터 포함

- 또한 ①, ②,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\*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

\*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②, ③항목만 공제 가능 → 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

### ②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·손녀 추가

-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·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,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

### ③ 월세·교육비·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

-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
-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의 15%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.
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에서 600만 원(900만 원)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%를, 초과자는 납입액의 12%를 공제.

### ④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

-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\*,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%를 세액공제

\*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

- 소속 노동조합1)이 11.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'23.10 ~ 12월2)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%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

1)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·연합단체·단위노동조합·산하조직 모두 포함  
2) '23.1월 ~ '23.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

## 2023년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요건표

구 分	공제 요건				비 고
	나이요건*	소득요건*	통거 요건	일시퇴거 허용	
주민등록동거					
기 본 공 제	본인	×	×	×	
	배우자	×	○	×	
	직계존속	60세 이상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1963.12.31. 이전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	○	×	2003. 1. 1. 0이후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×	○	×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1963.12.31. 이전 2003. 1. 1. 0이후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○
	위탁아동		○		
추 가 공 제	장애인	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	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			
	부녀자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
	한부모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자			
	연금보험료 공제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

\* **나이요건**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
\* **소득요건**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구 分	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		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비 고
	나이요건	소득요건			
특별 소득공제	보험료	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(건강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			
	주택자금공제	-	-	○	본인만 가능
	개인연금저축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
	주택마련저축	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
그 밖의 소득공제	신용카드 등	×	○	○	형제자매 제외
	자녀세액공제 (8세이상)	○	○	-	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·손자녀 포함)
	연금계좌세액공제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
	보장성보험료	○	○	○	
특별 세액공제	의료비	×	×	○	
	교육비	×	○	○	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
	기부금	×	○	×	기본공제대상자 * 정치자금기부금, 고향사랑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
	표준세액공제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